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2. 16 선고 2020가합112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장세훈

피고1. B

2. C

3.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공봉학

4. E

5. F

피고 2, 4,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봉학

변론 종결2022. 12. 8.

판결 선고2023. 2. 16.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91,91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0.부터 2023. 2.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114,628,23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114,628,2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B과 피고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110,201,5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F는 원고에게 110,201,5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B, E,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B: 피고 B은 원고에게 705,86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0.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20. 2. 27. 접수 제19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주위적으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20. 2. 27. 접수 제199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D: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별지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D는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20. 2. 27. 접수 제1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20. 2. 28. 접수 제2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D는 원고에게 511,370,2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E: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31. 체결된 매매계약,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E은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20. 4. 10. 접수 제34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제6항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20. 2. 26. 접수 제19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E은 원고에게 506,456,5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F: 피고 B와 피고 F 사이에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F는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20. 4. 13. 접수 제35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가구공사계약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피고가 포항시 G지역에 신축중인 건물의 가구설치 등 공사를 18,650,000원에 도급받고, 경북 울진지역에 신축중인 H아파트(이하 'H'이라 한다)의 가구설치 등 공사를 205,080,000원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2020. 1. 6.경 G지역 공사를, 2020. 2. 6.경 울진지역 공사를 각 마쳤으나, 위 각 공사대금 중 163,7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와 다른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원고는 2020. 6. 18. 피고 B의 채권자들로부터 다수의 채권을 양수받았는데, I 주식회사의 파일공사대금채권 78,000,000원, 주식회사 J의 도시가스 배관공사대금채권 17,413,000원, K의 미장, 방수, 조적공사대금채권 124,850,000원, L의 건축감리비채권 23,500,000원, M의 건축설계 및 감리비 채권 65,961,500원, N의 골조공사대금채권 218,456,750원, 합계 528,181,250원 상당을 양수하였다. 그리고 위 각 채권양도인들은 2020. 6. 22.경 피고 B에게 채권양도를 각 통지하였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

피고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그에 따른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피고 C	H O호(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2019. 12. 2. 매매대구지방법원 올진등기소 2020. 2. 27. 접수 제1993호 소유권이전등기
2	피고 C	H P호(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2019. 12. 2. 매매대구지방법원 올진등기소 2020. 2. 27. 접수 제1996호 소유권이전등기
3	피고 E	H Q호(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건물)	2019. 12. 2. 매매대구지방법원 올진등기소 2020. 2. 26. 접수 제1959호 소유권이전등기
4	피고 D	H R호(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2019. 12. 3. 매매대구지방법원 올진등기소 2020. 2. 27. 접수 제1990호 소유권이전등기
5	피고 D	H S호(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2019. 12. 3. 매매대구지방법원 올진등기소 2020. 2. 28. 접수 제2063호 소유권이전등기
6	피고 E	H T호(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건물)	2020. 3. 31. 매매대구지방법원 올진등기소 2020. 4. 10. 접수 제3428호 소유권이전등기
7	피고 F	H U호(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2020. 3. 31. 매매대구지방법원 올진등기소 2020. 4. 13. 접수 제3548호 소유권이전등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691,911,250원(= 163,730,000원 + 528,181,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12.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6.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M로부터 설계비채권 44,955,000원, 감리비채권 34,965,000원, 합계 79,920,000원 상당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M로부터 설계 및 감리비 채권 65,964,500원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금액을 초과하는 13,958,500원 부분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13,958,500원 부분에 관한 원고의 채권양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무자력자인 B이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위 피고들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E, D, F ① 원고가 피고 B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할 수 없다. ②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가구공사대금채권과 양수금채권은 위 피고들이 피고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③ 위 피고들은 모두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범위(소송신탁 여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2506 판결 참조).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채권양도인들 사이에 작성된 각 채권양도계약서는 모두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채권양도통지도 같은 날 한꺼번에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채권을 양수한지 3개월 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외에는 달리 채권회수를 위하여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채권양도인들은 개별적으로 피고 B를 상대하기 어려워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각 채권양도인들에 대하여 채권 등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채권양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위와 같이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채권양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할 수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발생 시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데, 원고가 G지역 공사를 2020. 1. 6.경에, 울진지역 공사를 2020. 2. 6.경에 각 마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163,730,000원은 위 공사완료 무렵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표 순번 1 내지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와 피고 C, D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B와 피고 E 사이의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B의 무자력 여부

위 표 순번 6, 7 기재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3. 31. 당시 피고 B이 무자력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1 내지 6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3. 31.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악의, 즉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한데, 위 표 순번 6, 7 기재 매매계약이 그 실질에 있어서 대물변제와 다르지 않음은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선의의 수익자 여부

(1) 피고 E

을가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의 남편 C는 2018. 11. 14.부터 2019. 11. 15.까지 피고 B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총 3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H 3세대를 대물변제에 제공하기로 하고 위의 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피고 E,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 C는 2019. 12. 4. 추가로 1억 원을 더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20. 1. 21. H아파트를 완공하여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나, 분양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피고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20. 3. 31.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을 대물변제에 제공하기로 하고, 위 표의 순번 6 기재와 같이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 B과 피고 E 사이의 매매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대물변제한 것과 다르지 않고, 이러한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피고 E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F

을가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V는 피고 B이 울진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신축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9. 8. 20. 처 W의 명의로 B과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

V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돈을 투자하였으나 위 약정에서 정한 바대로 원금의 반환이나 수익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을 대물변제 받기로 한 사실, 이후 V는 지인 X에게 위 건물을 인수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X의 처인 피고 F가 위 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피고 F는 약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에 관한 판단 피고 B와 피고 E, F 사이의 별지1 목록 제5,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거나, 그러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E

갑 제15호증의1, 제19호증의1, 을가 제9호증, 을나 제3호증의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은 2020.

4. 10. 피고 B과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위 건물 관련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B의 Y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174,371,764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1,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Y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E은 위 건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163,73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건물의 가액

289,000,000원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부분은

114,628,236원(= 289,000,000원 - 174,371,764원)에 한정되므로, 피고 B와 피고 E 사이의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114,628,23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 E은 원고에게 114,628,2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

갑 제15호증의4, 제19호증의7, 을가 제11호증, 을나 제3호증의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F는

2020. 4. 13. 피고 B와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위 건물 관련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B의 대출금채무

184,498,454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163,73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건물의 가액

294,700,000원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부분은

110,201,546원(= 294,700,000원 - 184,498,454원)에 한정되므로, 피고 B과 피고 F 사이의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110,201,5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 F는 원고에게 110,201,5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E,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사경화

판사나소라

판사김다혜

별지